수송부문 외부사업 승인 방법론

외부사업 업무 주체 변경

방법론 선택

· 국내 외부사업 방법론과 CDM 방법론의 일부 혼용 사용은 금지
· 국내 배출계수가 명확한 경우 국내 기준 사용
Ex) 전력배출계수 등

국내 수준 고려

· CDM 방법론이 국내 수준에 맞게 활용되도록 외부사업 승인 과정에서 적용된 방법론의 적절성 평가 강화

방법론 적용

· CDM 방법론 적용하는 경우 소규모 사업 기준, 경제성 분석 기준 등 소규모 특례 규정*은 국내 기준 적용
* 연간 3,000톤 이하

등록특례사업

· 등록특례사업 활용 불가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 HFC-23 감축사업, 아디픽산 제조공정의 N_2O 저감사업

수송부문 CDM 방법론

AM0089	가솔린과 식물성 오일의 혼합 원료를 사용한 디젤의 생산	수송 E (연료)	0 건
ACM0017	연료로 사용될 바이오디젤의 생산	수송 E (연료)	3 건
AMS-Ⅲ.T.	운송장비를 위한 식물오일 생산과 사용	신재생 E	1 건
AMS-Ⅲ.AK	수송 분야 적용을 위한 바이오디젤 생산과 사용	신재생 E	0 건
AMS-Ⅲ.AQ.	교통 수단에 바이오-CNG의 도입	신재생 E	2건
AM0031	간선급행버스 프로젝트에 대한 베이스라인 방법론	에너지효율	10건
AM0090	수상, 선로 및 도로운송에서 화물 운송의 수단 전환(Modal shift)	에너지효율	0건
AM0101	고속 승객 철도 시스템	에너지효율	0건
AM0110	수단전환(Modal shift)에서 액체연료의 운송	에너지효율	0건
ACM0016	대량고속수송(MRT) 프로젝트에 대한 베이스라인 방법론	에너지효율	8건
AMS-Ⅲ.C.	전기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의한 배출 감소	에너지효율	6건
AMS-Ⅲ.S.	상업적 단체 차량에 저-배출 차량/기술의 도입	에너지효율	0건
AMS-Ⅲ.U.	MRT(Mass Rapid Transit) 시스템을 위한 케이블카	에너지효율	1건
AMS-Ⅲ.AA.	개조기술을 이용한 수송 에너지효율 활동	에너지효율	0건
AMS-Ⅲ.AP.	포스트-피트 타입 공회전방지설비 적용으로 수송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효율	0건
AMS-Ⅲ.AT.	수송수단에 디지털속도계 등의 설치를 통한 수송에너지효율 활동	연/원료전환	1건
AMS-Ⅲ.BC.	차량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배출 감소	연/원료전환	0건
AMS-Ⅰ.M.	태양광발전을 통해 항공기의 게이트 작동을 위한 전기에너지 생산	신재생 E	0건
AM0116	항공기에서 e-taxi 시스템의 시행과 운영	신재생 E	0건
AMS-Ⅲ.BM.	이륜 및 삼륜 개인교통수단의 사용	에너지효율	0건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상쇄제도의 "참여"는
국내 탄소시장 "활성화"에 초석이 됩니다.

TS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TS 교통안전공단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49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개요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서 발행받은 인증실적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상쇄 또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

외부사업 정의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함

추진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9조(상쇄),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인증)등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활용

할당대상업체는 외부사업에서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KOC*)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에 활용하거나 거래시장에서 거래

* KOC(Korean Offset Credit)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실적 (1KOC=1tCO_2-eq)
* KCU(Korean Credit Unit) :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에 대한 실적을 인증받아 이를 배출권으로 전환

국토교통부

· 외부사업 승인
· 방법론 승인 및 개정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승인
· 상쇄등록부 관리·운영

교통안전공단

· 외부사업 승인
· 방법론 승인 및 개정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승인
· 상쇄등록부 관리·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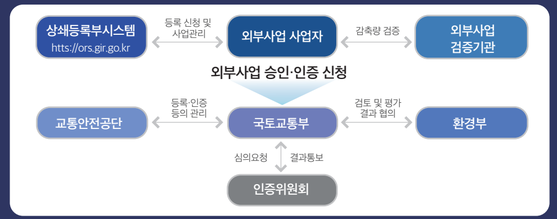

외부사업 주요 개정

2018년 5월 3일 , 6월 28일「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외부사업 업무 주체 변경

지침 상 외부사업 업무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역할분담 (제4조), 비밀준수(제6조), 자료제출(제7조)의 내용 개정

일부절차 진행내용 통보기간 제시

타당성 평가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평가 결과 통보(제13조)
방법론 승인 신청에 대해 60일 이내에 평가 결과 통보(안 제20조)

* 신청 · 접수 완전성 검토

신청접수 → 완전성 검토 → 기술검토 → 대면평가 → 환경부 협의 → 인증위원회 심의

30일 → 외부사업 타당성 1차 평가 기한
60일 → 외부사업 방법론 1차 검토 기한

정책 감축사업의 명칭 변경

'프로그램 감축사업'으로 명칭 변경
CDM에서의 프로그램 감축사업과 유사하게 진행가능

PoA
CPA CPA CPA

프로그램 감축사업 특징

사업계획서	방법론	상시 추가	일원화 수행	인증위 생략
프로그램 감축사업 1개 단위사업 1개	프로그램 & 단위사업 동일 방법론 사용	유효기간(28년) 내 단위사업 상시추가 가능	총괄사업자가 관련 모든 절차 수행	추가되는 단위사업의 인증위 심의 생략

프로그램 감축사업 추진 절차

- 프로그램 감축사업

프로그램 감축 사업	단위/프로그램 PDD 작성	단위/프로그램 PDD 평가	인증위 상정 및 승인	추가 단위사업 PDD작성	단위사업PDD 평가및 승인
총괄사업자	총괄사업자	총괄사업자	총괄사업자	총괄사업자	총괄사업자

최초 승인 후 추가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인증위심의 생략

- 단위 사업

최초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평가 → 인증위 상정 및 승인

추가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평가 → 인증위 상정 및 승인

⚠ 동일한 사업을 단일/감축사업으로 추진 시 동일한 사업 등록 프로세스 매번 수행 필요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세제도

외부사업 주요 개정

외부사업 업무 주체 변경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4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외국에서 사업 시행을 통해 얻은 배출권 중 5%이내로 제출이 가능

해외 감축량의 국내 활용이 가능한 지침 개정과 이에 대한 세부적인 [별표 9]신설

⚠ [별표 9]

① 국내 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의 유형

가. 국내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사업 사업주체로 **직접** 참여한 경우 (지분율20% 이상)
나. 국내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사업 사업주체의 **주주**로 참여한 경우 (지분율20% 이상)
다. 국내 기업 등이 불특정 다수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사업주체인 **최종 사용자**에게 감축 제품·기술 등을 **보급** 또는 **판매**한 경우 (누적 사업비의20% 이상)
라. 국내 기업 등이 최빈국·저소득국가에서 진행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또는 **해외 국가·지자체와 공동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② 사업유형 별 제출 필요 서류

가. **직접 참여** (· 소유권/운영권 비율 입증 서류 · 국내 기업 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동일주체→ **감축사업 주체** (· 국내기업의 CDM 사업 추진) → CDM 사업

나. **주주 참여** (· PDD 등록시점 이후 주주구성 · 주주 중 국내 기업에 해당하는 입증서류) —지분투자→ **감축사업 주체** (·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기업을 통한 간접 참여) → CDM 사업

다. **보급·판매 참여** (· 제품 보급,판매실적 증명서류 · 계약자중 국내기업 입증서류 · 국내기업의 사업 참여 입증서류) —제품·기술의 보급 또는 판매→ **감축사업 주체** (· 고효율 제품의 보급 또는 판매자) → CDM 사업

라. **저소득 국가 지원** (· 총 사업비 증명서류 · 감축사업 비용지원 계약서 · 국가,지자체 등 공동 지원서류 · 국내외 공동인경우 국내의 비율 · 국내기업 입증서류) —비용지원 (국내·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동지원)→ **감축사업 주체** (· 반드시 감축사업 주체일 필요 없음) → CDM 사업

외부사업 등록, 인증 및 방법론 승인 절차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의거 외부사업 등록, 인증 및 방법론에 대한 승인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절 차	수행주체
1단계	외부사업 승인,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방법론 승인 신청	외부사업 사업자
2단계	외부사업 승인,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방법론 승인 신청 접수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검증결과 검토 및 방법론 검토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검증결과 검토 및 방법론 검토 결과 통보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수정·보완)	외부사업 사업자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검증결과 검토 및 방법론 검토 완료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환경부 협의	환경부
3단계	승인 및 인증 요청	인증위원회
	승인 및 인증 심의	인증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상쇄등록부 반영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수송부문 외부사업 승인 방법론

"방법론"이란 온실가스 감축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함.

번 호	구 분	방법론 명
1	07A-001-Ver001	바이오 CNG생산 및 자동차 연료 이용 사업의 방법론

적용조건

1. 바이오 CNG는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매스에 의해 생산되어져야 함
2.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 CNG는 차량의 연료로서 사용되어져야 함
3. 바이오 CNG는 일반 CNG 차량 및 개조된 CNG 차량에 사용되어져야 함
4. 바이오 CNG 생산을 위해 생산 및/또는 공급된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의 혐기적 소화작용에 의해 생성된 것이어야 하며, 기존에 에너지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5.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메탄 함량은 국가기준1)에 부합된 것이어야 함
6. 반응기에 남은 소화된 잔류물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메탄이 발생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함

적용 불가 조건

1. 생산된 바이오 CNG를 도시가스 공급망으로 전송하는 사업
2. 최종 사용자 및 소매상이 바이오 CNG를 사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
3. 생산된 바이오 CNG을 수출하는 사업

번 호	구 분	방법론 명
2	07A-002-Ver001	국내선박의 유류발전을 선박육상전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의 방법론

적용조건

1. 사업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시스템의 수명을 고려하여 사업의 유효기간은 추정된 잔여 수명으로 제한
2. 선박육상전원 연결로 인한 감축효과 이외의 다른 감축효과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
3. 사업 후 사용 전력은 전력 계통으로부터 수전
4. 사업 전/후 연료는 2006 IPCC GL 배출계수 또는 국가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 심의· 확정된 배출계수가 제시되어야 하며, 부재시 고유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적용해야함

적용 불가 조건

1. 사업이전 계통망으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던 사업
2. 사업이전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던 사업